

의안번호	2202095
의 퇴 인	이철규 의원
회 답 일	2024. 8. 1.
추 계 번호	24A2228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부칙 제2조(유효기간)	제37조의4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부칙 제2조(유효기간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가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의 전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금·회계 간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
 - 개정안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(산업기술혁신계정)의 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(이하 특별회계)에의 전출의 유효기간을 현행 "2024년 12월 31일까지"에서 "2029년 12월 31일까지"로 연장하는 내용임(부칙 제2조)
 -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동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으로 163억원이 편성되어 있음(2024년 예산 기준)

[표 3] “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전출”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	2020년 결산	2021년 결산	2022년 결산	2023년 결산	2024년 예산
전출금	28,800	20,656	25,800	28,800	16,300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- 다만, 전출 근거가 계속 유효하면 특별회계의 수입이 증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또한, 개정안이 의결을 전제로 하는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이철규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2202094호)은 특별회계의 세출사업에 “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”을 추가하고 있음¹⁾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의 재정사업별로 향후 추진계획 등을 확정하여야 하나,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으로 현시점에서 현행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의 규모 등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1)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」 제70조제2항제1호자목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